

1

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구체화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(현황)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-194호)의 (별표1)의 건설기계, 가설구조물의 정기안전점검 실시 시기는 명확하게 규정됨.
- (문제점) 대상 시설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아 점검누락 및 시공사,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불필요한 마찰유발.

□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

- (개선방향) 건설기계, 가설구조물의 점검대상 시설물의 명확화.
- (기대효과)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점검누락 예방과 재해예방 및 시공사, 감리와의 불필요한 마찰해소.

현행	개선안	법규명
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만 명기	건설기계는 현장 반입 작업 시 마다 가설구조물은 설치 개소 마다 점검실시	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(별표1)

□ 관련 조문

-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[별표1]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

현행	개선안
※[별표1]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.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	※[별표1]에서 정의하고 있는 건설공사 종류 이외의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정기안전점검은 시공자가 정기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를 정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.검토를 득한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 건설기계는 현장 반입 작업 시 마다, 가설구조물은 설치 개소 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 하여야한다. 이때 점검차수는 최소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